
세무(1)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지방세정 홍보 강화

-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, SMS 및 온라인(페이스북),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정보기술 및 홍보 기법을 이용하여 세무 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목별 납기 개시 10일 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.

2. 납세자의 권리 보호

- 「납세자 권리헌장」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, 납세자 과세 정보제공 시 법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겠습니다.
- 과세 처분 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,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이의 신청·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에 대하여는 비과세·감면 요건과 감면 범위 등을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

3. 신속·정확·공정한 세무 서비스 제공

- 세무조사 시에는 조사 15일 전 사전통지를 하고, 세무조사 결과 통보,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처리 시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즉시 환급 처리 하겠습니다.

-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**인터넷지로, 위택스**를 통한 온라인 납부, **카카오페이** 등을 통한 모바일 페이 납부, **지방세 ARS 납부, 자동 계좌 이체 납부** 등 다양한 맞춤형 납부 제도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과세 자료를 완벽히 구축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전자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 등 다양한 고지서 송달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4. 정확한 고지서 송달

-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송하여 납기 마감일이 임박하여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전화를 주시면 수취하기 편리한 곳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5.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

◆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안내 ◆

세 목		신 고 기 한
등록면허세	면 허 분	신규·변경 면허 취득 시
주 민 세	사업소분	8. 1. ~ 8. 31.
	종업원분	다음달 10일까지

- ☞ 지방세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은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%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가 가산됩니다.

◆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◆

세 목	납 기	세 목	납 기
등록면허세 (면허분)	1. 16. ~ 1. 31.	주민세 (개인분)	8. 16. ~ 8. 31.
재산세 (건물분, 선박, 주택분1/2)	7. 16. ~ 7. 31.	재산세 (토지분, 주택분1/2)	9. 16. ~ 9. 30.

☞ 정기분 세목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(가산금) 3%와 매월 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(중가산금)(체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)이 가산됩니다.

6. 서비스별 접수 · 문의 창구

서 비 스 명	담 당	전 화 번 호	팩 스 (FAX)
지방세 법령 및 조례 제 · 개정, 지방세정보화	세정관리담당	220-4181~4	220- 4189
재산세 부과 및 징수	재산세담당	220-4281~6	
주민세, 등록면허세(면허분) 신고접수 및 부과 · 징수	주민세담당	220-4201~4	
세무조사, 개별주택가격조사 · 산정	세원조사담당	220-4331~4	

7.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

-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.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민원서류 신청 시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주시면 서류 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
- 지방세를 체납하시게 되면 강제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지정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